

문화산업보증 인수규정

제 정 : 2025. 5.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령”이라 함) 및 문화산업보증 업무방법서(이하 “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문화산업보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보증”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산업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란 청약서(전자문서 형태의 청약서 포함)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발급된 보증서(전자문서 형태의 보증서 포함, 이하 동일)를 말한다.
3. “채무자”란 신용보증 대상기업(개인기업인 경우 대표자)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령, 방법서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약관과 내규에 따른다.

제3조(위임전결) 문화산업보증 업무의 전결권자 또는 심사요청 대상부서는 별표의 “문화산업보증 인수보상 위임전결표”에 따른다.

제2장 보증대상

제4조(보증대상기업)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상품의 수출을 계획 중이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 한다.

1. 영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방송, 공연, 출판 등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문화상품

제5조(보증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한도의 책정을 금지한다.

1.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보증 사고와 관련하여 공사에 대한 채무(공사로부터 감면받거나 법률에 의해 면제 또는 면책 받은 채무는 제외)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2.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금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채무자가 허위 수출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보험 등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4. 채무자가 보험료 또는 보증료를 연체 중인 경우
5. 채무자가 휴·폐업 상태인 경우
6. 채무자가 문화상품과 관련하여 체결된 수출계약 또는 수출계획이 없는 경우
7. 그 밖에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제3장 보증운용

제6조(보증취급절차) ① 보증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의한 절차를 거친 후 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한다.

제7조(신용등급 평가) 문화산업보증 제공을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사신용조사규정」에 따른다.

제8조(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최고한도는 30억원 이내로 운용한다.

제9조(부분보증) 문화산업보증은 부분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개별특약) 개별특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약관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강화하는 보증서의 유효조건, 세부 행정절차 및 기타 신용보증인수 관련 경미한 사항 등은 전결권자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보증료 등

제11조(보증료) 보증료율은 기업의 신용도에 보증금액, 보증거래기간 등에 따라 일정율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적용하되, 연율 1,000분의 5부터 연율 1,000분의 35 이내에서 운용한다.

제12조(보증료의 환급) 채무자 등이 보증료의 환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환급보증료를 지급한다.

제5장 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 행사

제13조(보증채무의 이행) 채무자가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받은 경우에는 「보상규정」에 따라 약관 등의 준수여부를 심사한 후 그 채무를 이행한다.

제14조(구상권의 행사)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국내채권관리규정」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구상권행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인수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5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법령, 방법서 및 이 규정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에서 보증업무, 채권관리업무 등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이미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제정)

이 규정은 202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산업보증 인수보상 위임전결표

일련 번호	직 무 내 용	전결권자 또는 심사요청 대상부서
1	보증 인수 업무 ^{주)}	
	① 신규보증	
	ㄱ. 10억원 이하	팀장
	ㄴ. 20억원 이하	부서장 및 지사장
	ㄷ. 20억원 초과	혁신심사부
	② 재보증(조건변경 및 갱신보증 포함)	
	ㄱ. 15억원 이하	팀장
ㄴ. 15억원 초과	부서장 및 지사장	
2	보상 및 채권관리 업무	‘인수보상 위임전결규정’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을 준용
주) 문화산업보증 보증심사 대상 금액 기준으로 위임전결표 적용		
* 본 위임전결표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규정의 유사사항을 준용한다.		